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30
----------	------

제출년월일 : 2018년 3월 2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출산축하용품 지원의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원대상·방법·범위 등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지원대상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2조(정의) 제5호 ~ 제8호 신설하여 출산축하용품, 대상 아이, 보호자, 지원대상자 규정
- 나. 제4조의2 제2항 신설하여 1인당 지원금액 10만원 이내 규정
- 다. 제4조의2 제3항 신설하여 서울시 내 자치구 주민등록자로 지원대상 규정
- 라. 제4조의2 제4항 신설하여 지원신청 방법 규정
- 마. 제4조의2 제5항 신설하여 지원 신청 시 행정사항 규정
- 바. 제4조의2 제6항 신설하여 출산축하용품 지급방법 규정
- 사. 제4조의2 제7항 신설하여 허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출산축하용품 지급받았을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
- 아. 제4조의2 제8항 신설하여 출산축하용품의 지급 실적

확인의무 규정

- 자. 별지 제1호 서식 신설하여 제4조의2 제4항에 따른 지원신청서 서식 규정
- 차. 별지 제2호 서식 지원대상자 명부, 별지 제3호 서식 지원대장 및 별지 제4호 출납대장 신설
- 카. 제4조의2에 관한 사항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 개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2018년 예산 반영됨(비용추계서 첨부)
-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사항 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2018년 예산 반영됨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수용
-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 (5)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갈등사항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붙임
- (2) 비용추계 등 자료: 별도 붙임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저출산 인식개선”을 “저출산 인식개선 정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출산축하용품”이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6. “대상 아이”란 서울특별시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 의해 주민등록표에 ‘출생’ 등의 사유로 신규 등록된 아이를 말한다.
7. “보호자”란 친권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대상 아이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8. “지원대상자”란 대상 아이의 보호자 중 1명으로 서울특별시 자치구 내에 주민등록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부모 또는 보호자”를 “보호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출산축하용품 지원금액은 대상 아이 1명당 10만원 이내로 한다.
- ③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대상 아이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④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대상 아이의 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 출산축하용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시장은 신청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도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대상 아이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정한다)
3. 대상 아이의 보호자가 법원이 지정한 친권자 및 후견인인 경우 대상 아이의 기본증명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에서 대상 아이를 보호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수급자증명서

⑤ 시장은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기 전에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지원 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 명부,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산축하용품 지원 대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산축하용품 출납대장에 각각 관리하여야 한다.

1. 대상 아이의 출생등록 사항
2. 대상 아이 및 지원대상자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사항
3. 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및 이중 지원 신청 여부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출산축하용품을 지급한다. 지급방법은 제4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청서 상 수령방식에 따른다.

⑦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출산축하용품을 지

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즉시 환수하고, 이를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출산축하용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물품으로 환수
 2. 출산축하용품을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출산축하용품의 구입가액으로 환수
- ⑧ 시장은 출산축하용품 지원실적을 매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축하용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대상 아이와 관련된 지원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청서 (제4조의2제4항 관련)

접수번호 :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출생아와의 관계	
	주 소				
	메일주소			성별	남 / 여
보호자	부	성 명	(인)	생년월일	
	모	성 명	(인)	생년월일	
	부·모 외의 보호자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출생아	성 명			출생일자	년 월 일
	주 소			성별	남 / 여
수령방식 (①, ② 중 택1)	① 직접 수령 신청 () ② 택배 신청 () / 받을 주소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2에 따라 출산축하용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지원대상자, 지원기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신청자 확인> 1. 출산축하용품을 지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 내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합니다. 2. 거주지 관할 동장에 의해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유가 '출생' 등으로 신규 등록된 아이에게만 적용되며,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3.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된 출산축하용품이 환수조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은 위 사항을 안내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 인)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

【 대상자 확인 】					
확인 사항	보호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출생아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지원여부	결정() 미결정()				
확 인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2. (생 략)</p> <p>3. <u>“저출산 인식개선”</u>이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민·관·학이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행사, 홍보 등을 말한다.</p> <p>4. (생 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2조(정의)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저출산 인식개선 정책”</u> ----- ----- ----- -----.</p> <p>4. (현행과 같음)</p> <p>5. <u>“출산축하용품”</u>이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p> <p>6. <u>“대상 아이”</u>란 서울특별시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 의해 주민등록표에 ‘출생’ 등의 사유로 신규 등록된 아이를 말한다.</p> <p>7. <u>“보호자”</u>란 친권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대상 아이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p> <p>8. <u>“지원대상자”</u>란 대상 아이의 보호자 중 1명으로 서울특별시 자치구 내에 주민등록을</p>

제4조의2(출산축하용품 지원) 시장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예산범위에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마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의2(출산축하용품 지원) ①

-- 보호자-----

-.

② 출산축하용품 지원금액은 대상 아이 1명당 10만원 이내로 한다.

③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대상 아이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④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대상 아이의 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 출산축하용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시장은 신청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도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대상 아이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정한다)

3. 대상 아이의 보호자가 법원이 지정한 친권자 및 후견인인 경우 대상 아이의 기본증명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에서 대상 아이를 보호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수급자증명서

⑤ 시장은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기 전에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지원 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 명부,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산축하용품 출납대장에 각각 관리하여야 한다.

1. 대상 아이의 출생등록 사항

2. 대상 아이 및 지원대상자의

<신 설>

<신 설>

<신 설>

관내 주민등록 등재 사항

3. 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및 이중 지원 신청 여부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출산축하용품을 지급한다. 지급방법은 제4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청서 상 수령방식에 따른다.

⑦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즉시 환수하고, 이를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출산축하용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물품으로 환수

2. 출산축하용품을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출산축하용품의 구입가액으로 환수

⑧ 시장은 출산축하용품 지원실적을 매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붙임]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 용 추 계 서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시 모든 출산 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로 (10만원x해당출산가정수)만큼의 비용이 발생
- 2. 비용추계의 전제**
 - 매년 출생아수가 변동되므로 정확한 비용을 추계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아래 비용추계의 결과는 2016년 출생아수(37,750명)를 기준으로 비용 추계함, 2018년의 경우 7월부터 시행이므로 6개월치 반영, 차년도부터는 1년치 반영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	계	4,125	7,900	7,900	7,700	7,700	35,325
	사회보장적수혜금	3,775	7,550	7,550	7,550	7,550	33,975
	사무관리비	350	350	350	350	350	1,750

- 4. 재원조달 방안** : 해당없음
- 5. 덧붙이는 의견** : 해당없음
- 6. 작성자**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윤지원 주무관(T. 2133-5176)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2018년)

- 대상아동('18년 7월 이후 출생아수) : 37,750명
※ 서울 출생 아동수(통계청) : 75,500명('16년)
- 지원비용 : 1인당 10만원
- '18년 소요예산 : 4,125백만원(시비 100%)
 - 사회보장적 수혜금 : 100천원 x 37,750명 = 3,775백만원
 - 사무관리비 : 사업 홍보, 출산양육 정보 수록 책자 제작 등 350백만원